지방자치 Focus
2013. 8
제62호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향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목 차]

Ⅰ. 문제제기
Ⅱ. 재정분권과 사회복지정책
Ⅲ.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현황
Ⅳ.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주요 쟁점
Ⅴ.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개선방향
Ⅵ. 맺음말

지방자치 FOCUS 제62호(2013. 8)

내용문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김성주
02-3488-7340 / sjkim@krila.re.kr

배포문의 발간 담당자(02-3488-7399)

본 내용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www.krila.re.kr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향

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향

Ⅰ. 문제제기

○ 사회복지환경이 2003년 이후 급격히 변화되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제 사회복지 수요자 역시 시혜가 아닌 당연한 권리로써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이미 기초생활 '보호' 가 아닌 '보장' 이 되고 노인 '수당' 이 아니라 '연금' 으로 명칭이 변화된지가 수년이 흘렀으며, 무상급식 등 다양한 사회복지사업들이 일부 취약계층이 아니라 계층 전부에게 보편화 되어 가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음

○ 2011년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전부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 복지제도를 사회서비스로 포괄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외에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인 평생사회안전망의 개념이 도입되었음

○ 박근혜정부 정부3.0의 핵심추구가치는 국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행정서비스[1]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바로 사회서비스 투자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됨

– 2000년대 초반 이후 사회투자정책의 흐름은 단순히 공급자 입장에서 기회와 소득의 재분배가 아니라 수요자 개개인의 입장에서 각각이 만족하는 재분배, 즉 일률적이 아니라 서로 다른 모양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수요자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야 한다는 것임

○ 반면 사회보장기본법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사회서비스라는 용어의 새로운 정의가 내려짐과 동시에 분야와 수혜대상이 넓어지고 다양해지고 있지만 사회복지분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 체계는 이상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1980년대 중반의 것이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으며,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 1980년대 중반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보다는 오로지 나라살리기에 여념이 없었던 시대로서 그 당시의 보조율 체계가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사회복지사업에 적용되어 오고 있는 상황임

○ 민선 6기를 앞두고 있지만 변함 없는 80:20의 국세:지방세 세입구조와는 반대로 사회복지사업 규모의 급격한 확대정책(2013년도 영유아보육비가 2008년 대비 2배)은 지방재정 건전성과 관련하여 사실 계속 문제를 키워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전반적인 운영현황과 주요 쟁점사항들을 살펴본 후 향후 급변하는 사회복지환경을 반영한 개선방향에 대해 시사하고자 함

---

1) 전부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와 제23조에서는 기본욕구와 특수욕구를 고려하여 소득 ·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인 평생사회안전망의 개념을 도입하였음. 여기서 "사회서비스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라고 정의하고 있음

Ⅱ. 재정분권과 사회복지정책

□ 정치경제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의 특성 변화[2)]

○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이후 빈곤에 대한 국가정책은 온정적 보호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로 전환되었으며,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들은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전개되었음[3)]

○ 2000년대 이전까지 절대빈곤에서 탈피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지출은 경제개발 특히 물리적인 SOC 투자에 집중하였고, 이후 물리적 기반과 함께 사람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고 이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기반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 이제 경제개발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이 가능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교육,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등과 같은 인적 자산 투자가 중요하게 됨

□ 사회정책환경 변화와 거버넌스

○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사회투자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설계되어야 하는데 먼저, 거버넌스를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함

○ 공공문제의 해결은 규모가 큰 정부나 국가가 아니라 충분하고 안정적인 거버넌스 역량을 갖춘 국가에 의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짐

– 즉 정부(역량)를 통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거버넌스(역량)를 통한 문제 해결이어야 함

○ 효과적인 사회투자정책의 추진을 위해서 사회복지관련 의사결정구조를 지배하는 거버넌스를 변경하면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구조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핵심임

○ 효율적인 사회투자정책을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지향되어야 하며 관련 정책이 단순히 기회의 재분배에 그치지 않고 결과의 재분배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함

– 이를 위해 기존의 표준화 된 획일적 서비스에서 비표준화 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tailored service)로의 전환이 필요함

– 맞춤형 서비스의 핵심은 고객 요구 수용성의 극대화이며, 이는 고객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가능함

---

2) Ⅱ장은 이재원(2007,2011,2012)을 중심으로 재정리

3) 당시 참여연대에서 국민들의 최저생활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생활보호수급권청구소송 운동을 전개하면서 공공부조를 보호가 아닌 청구권적 권리의 개념으로 인식하고자 했음. 이러한 사회운동의 주장들을 수용하여 1999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음. 이후 빈곤에 대한 정책과 사회운동들은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최저 생활 수준 설정에 초점이 맞추어 졌음(이재원, 2012)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향

□ 재정분권과 사회복지정책의 변화

○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재정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는 미흡하였는데, 재정자립도와 정부간 세원배분 구조 등에서 자치 이전의 집권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참여정부에서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지만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지방사무 및 기능 이양에 집중하였으며, 분권재정 구조를 어떠한 수준으로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는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음

○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은 개별사업 중심으로 임의적이고 단편적인 국고보조율체계 개편 논의에 앞서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정부간 재정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간 재정 "권력" 관계가 아닌 정부간 공공서비스 "기능" 관계의 관점에서 지방재정의 분권과 책임 구조를 설계해야 함

○ 또한 사회복지분야에서 보조금체계에 대한 설계는 관련 사업 자체의 정치 경제적 특성 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세입구조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

○ 국가별로 다양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주요 국가의 특정 측면들만 고려하면 합리적인 대안 설계가 용이하지 않음

– 〈표 1〉에서와 같이 국세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공공부조에서 중앙정부의 재정부담 비중 역시 높음

〈표 1〉 주요 국가의 세수구조와 공공부조에 대한 정부간 재정분담 구조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스웨덴		독일	
세수 구조 2) (2003)	국세	62.4		38.8		35.8		75.5		55.0		30.2	
	지방세 1)	18.0		34.9		25.7		4.8		32.7		28.4	
	사회보장기여금	19.5		26.4		38.5		18.5		11.6		40.5	
	기타 2)							1.2		0.7		0.9	
재정 분담률(%) (1998년)		중앙	지방	중앙	지방	중앙	지방	중앙	지방	중앙	지방	중앙	지방
		80 (50)	20 (50)	50 ~60	40 ~50	80 (50)	20 (50)	100	0	0	100	0	100

주 : 1) 연방제 국가의 지방세에서는 주 및 지방정부 비율
2) EU 등과 같은 초국가정부(supernational) 세입
자료 : 이재원(2007)

Ⅲ.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현황

□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현황

○ 대부분의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13년도 국고보조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보조사업 총액이 전년대비 약 4조원 증가('12년 24.3조원 → '13년 28.7조원)하면서 매칭 지방비도 2.1조원 증가('12년 8.0조원 → '13년 10.1조원)했음

– 한편, '13년 평균 보조율은 64.9%로 70%를 넘지 못하는 수준이며, '12년(66.7%) 대비 2.2%p 하락한 수치임

〈표 2〉 '12~'13년 복지부 · 여가부의 국고보조사업 현황

(단위 : 억원)

	2012년				2013년			
	계	국비	지방비	평균보조율	계	국비	지방비	평균보조율
합계	242,886	163,165	79,721	67.1%	287,359	186,759	100,600	64.9%
복지부	237,702	159,967	77,735	67.2%	281,511	183,230	98,281	65.0%
여가부	5,184	3,198	1,986	61.6%	5,848	3,529	2,319	60.3%

자료: 안전행정부 내부자료, 중앙부처 대상 조사결과 기준('13.5)

○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년간 연도별 사회복지비 비중을 살펴보면 중앙의 총지출은 6.3%, 중앙의 복지지출은 2.4%, 지방의 총지출은 4.8% 증가한 반면 지방의 사회복지비 지출은 9.3%나 증가했음

– 즉 2005년에는 지방 총 예산 대비 사회복지비가 12.0% 정도였으나, 2011년에 20%대에 진입한 이후 2013년도에 벌써 24.2%로 나타나서 빠른 증가세를 보임을 알 수 있음

〈표 3〉 중앙과 지방의 연도별 사회복지비 비중

(단위 : 조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중앙 총지출 (A)	209.6	224.1	238.4	262.8	284.5	292.8	309.1	325.4	342.0	6.3%
복지지출 (B) (비중 B/A)	49.6 (23.7)	56.0 (25.0)	61.4 (25.8)	68.8 (26.1%)	74.6 (26.2%)	81.2 (27.7%)	86.4 (27.9%)	92.6 (28.4%)	97.4 (28.4%)	2.4%
지방예산 (A)	107.0	115.5	112.0	125.0	137.5	139.9	141.0	151.1	154.4	4.8%
사회복지비 (B) (비중 B/A)	12.9 (12.0)	15.3 (13.3)	17.3 (15.4)	21.7 (17.3%)	24.1 (17.6%)	26.5 (19.0%)	28.5 (20.2%)	30.9 (20.4%)	37.4 (24.2%)	9.3%

※ 사회복지 = 사회복지분야 + 보건분야 / '05~'12 최종예산 순계기준, '13 통합재정지출 기준
※ 자료 :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05~'12),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13)
※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예산개요('05~'13)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향

〈그림 1〉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비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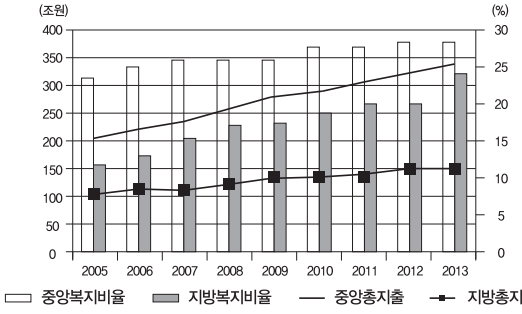

○ 사회복지비 비중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과 지방의 총지출액과 SOC 비율, 보건복지비 비율의 최근 5년간 추이를 비교해 보면 〈그림 2, 3〉과 같음

– 〈그림 2〉 중앙의 경우 SOC 비율이 소폭 상승세인 반면, 보건복지비 비율은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반면 〈그림 3〉 지방의 경우 SOC 비율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보건복지비 비율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2〉 중앙의 총지출 · SOC · 보건복지비 비율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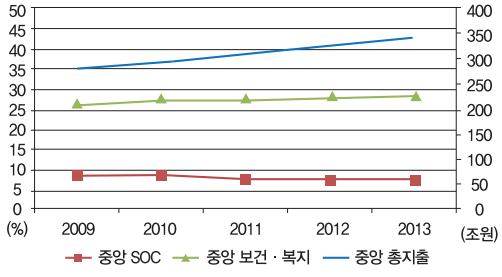

〈그림 3〉 지방의 총지출 · SOC · 보건복지비 비율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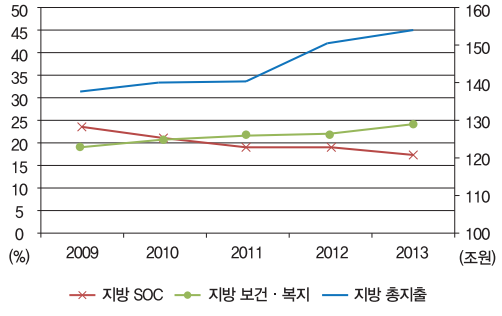

○ 또한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정책사업 중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비중을 보면 보조사업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08년에 42.6%에서 2013년에는 52.0%로 증가하였고, 자체사업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2008년에 57.4%에서 2013년에는 48.0%로 감소하였음

〈표 4〉 지방자치단체 정책사업 중 자체사업 · 보조사업 비중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정책사업	100.3	111.6	112.9	112.5	120.7	125.0
자체사업	57.6 (57.4%)	62.8 (56.2%)	59.2 (52.4%)	57.0 (50.7%)	60.6 (50.2%)	60.0 (48.0%)
보조사업	42.7 (42.6%)	48.8 (43.8%)	53.7 (47.6%)	55.5 (49.3%)	60.1 (49.8%)	65.0 (52.0%)

주 : 당초예산 기준
자료: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08~'12),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13)

〈그림 4〉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과 보조사업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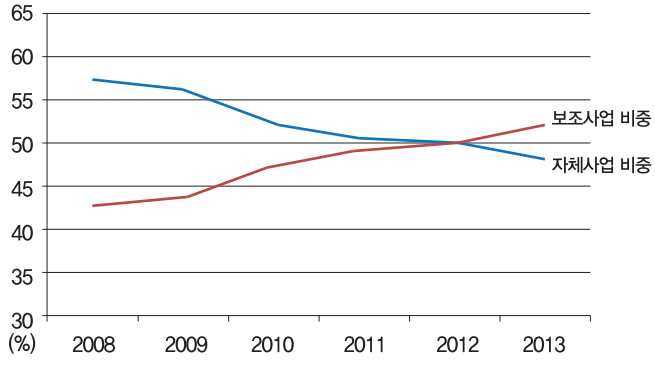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향

□ 지방자치단체 계층별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현황

○ 지자체 계층유형별로 복지 세출과 세입구조(2011년 기준)를 살펴보면 자치구의 복지비중이 44.0%로 가장 높고 다음이 도 계층(25.6%), 특별 · 광역시(25.2%), 시 · 군(18.1%)의 순서임

– 특히 표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자치구는 세목이 2개 밖에 되지 않으므로'04~'10년간의 세수 신장율이 5.9%에 그치고 있고, 시 · 군 계층이 규모는 작지만 6년 사이에 세수신장율은 가장 높은 편(63.7%)으로 나타났음

– 또한 자치구의 경우 서울시 자치구는 교부세 불교부단체이고 광역시의 경우도 광역자치단체를 거쳐 조정교부금 형태로 재산정되어 배부되므로 직접적으로 교부세는 받지 못하는 상황임

○ 대도시 및 자치구가 갖는 구조적 문제도 자치구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경제력에 따라 거주지가 결정되므로 재정력이 약한 자치구에 복지부담이 가중(강남구 vs. 노원구)되고, 일부 자치구는 인구 · 면적이 과소하여 자립기반이 부족한 상황임

– 즉 자치구 평균이 32만 8천명인데, 부산 중구가 4만 9천명, 강서구가 6만 5천명 밖에 되지 않는 상황임

〈표 5〉 지자체 유형별 복지세출 · 세입구조('11년 기준)

구 분		특별 · 광역시와 자치구		도와 시 · 군	
		특별 · 광역시(7개)	자치구(69개)	도(9개)	시 · 군(159개)
세출	복지 비중	25.2%	44.0%	25.6%	18.1%
세입	지방세목	9개	2개	6개	5개
	세수증가율 ('04~'10)	35.7%	5.9%	48.0%	63.7%
	교부세 지원 여부	○ (서울 제외)	×	○	○ (용인 등 제외)

자료: 안전행정부 내부자료

○ 사회복지비 비율별로 전국 지자체의 분포도를 살펴보면 사회복지비비율 10~20% 사이가 지자체의 47.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20~30%의 사회복지비 비율을 가진 지자체가 많았음

– 시도계층은 사회복지비 비율 20~30%미만이 가장 많았고(12개), 시계층은 20~30%(37개), 10~20%미만(35개)이 비슷했고, 군단위는 10~20%미만(77개), 자치구단위는 50% 이상이 23개 자치구로서 가장 많았음

〈표 6〉 지자체 사회복지비 비중의 분포

구 분	합 계	구성비	시 · 도	시	군	자치구
합 계	244	100	16	74	85	69
10%미만	2	0.8	–	–	2	–
10–20%미만	115	47.1	3	35	77	–
20–30%미만	62	25.4	12	37	6	7
30–40%미만	21	8.6	1	2	–	18
40–50%미만	21	8.6	–	–	–	21
50%이상	23	9.4	–	–	–	23

자료: 행정안전부, 「2012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 지방이양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현황

○ 참여정부 때 재정분권을 지방분권의 핵심적 전략과제로 채택하고, 전체 149개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분권교부세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 때 67개의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이 포함되어 있었음

○ 2005년도에 67개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을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이양한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 7〉과 같음

– 분권교부세로 이양 전에는 국비 비중이 2002년 45.1%에서 2004년 47.2%까지 증가했지만 이양 이후에는 2005년 32.9%로 급감하였고 2009년에는 30.2%까지 떨어졌으며 이후 3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음

– 반면 지방비 비중의 경우 이양 전에는 50%대 초반을 유지하다가 이양 후 2009년에는 거의 70% 가까이 되었으며 이후 68%대 이상의 비중임

〈표 7〉 사회복지 분권교부세 사업의 예산 추이

(단위 : 억원, %)

		규모			비중		
		총사업비 (A)	국비 · 분권 (B)	지방비 (C)	합계	국비 · 분권 비중(B/A)	지방비 비중(C/A)
이양 전	2002	9,247	4,215	5,032	100.0	45.6	54.4
	2003	10,434	4,912	5,522	100.0	47.1	52.9
	2004	12,951	6,107	6,844	100.0	47.2	52.8
이양 후	2005	16,820	5,531	11,289	100.0	32.9	67.1
	2006	19,201	6,955	12,246	100.0	36.2	63.8
	2007	22,268	7,955	14,313	100.0	35.7	64.3
	2008	26,200	9,518	16,682	100.0	36.3	63.7
	2009	28,134	8,507	19,627	100.0	30.2	69.8
	2010	30,019	9,509	20,510	100.0	31.7	68.3
	2011	33,454	10,582	22,872	100.0	31.6	68.4
연평균증가율	이양 전	18.3	16.6				
	이양 후	14.4	18.6				

자료) 최병호외, 2011

〈그림 5〉 국비/분권과 지방비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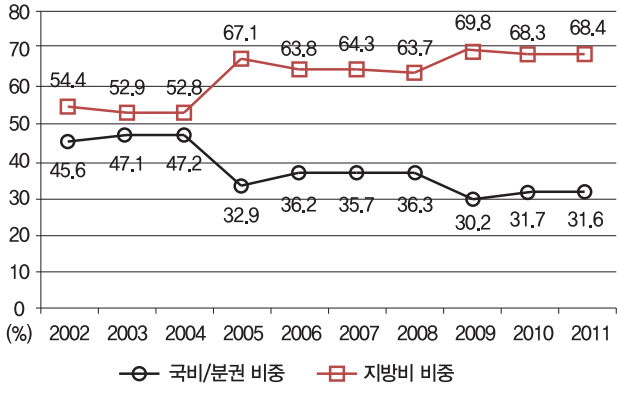

Ⅳ.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주요 쟁점

○ 국가의 경제개발이 한편으로는 국민의 복지를 위한 것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지식기반 현대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 사회복지 국고보조금과 관련하여 주요쟁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쟁점 1.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목적 및 대상의 확대에 따라 중앙-지방의 갈등 심화[4)]

가.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 운영현황

○ 2008~2013년 동안 보육료 지원은 매년 소득기준 등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자를 확대시켜 왔음

○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의 연도별 대상자 확대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에는 차상위계층까지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2013년에는 보육료지원체계 개편안을 통해 만 3~5세는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만 0~2세는 소득하위 70%는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며, 소득상위 30%는 본인부담금 제도를 도입, 보육료의 일부만 지원하는 것을 변경할 계획임

4)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 예산안 분석을 중심으로 재정리

〈표 8〉 보육료 지원대상 변화과정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안	비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11,126	12,822	16,322	19,346	23,913	21,623	
지원대상	보육료 전액지원	차상위계층	소득하위 50%	소득하위 50%	소득하위 70%	만3~4세 소득상위 30%를 제외한 전 연령 및 소득계층	만0~2세 소득상위 30%를 제외한 전 연령 및 소득계층	
	보육료 일부지원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00%	소득하위 70%	소득하위 70%	–	–	–	
	기타			맞벌이가구 지원	맞벌이가구 지원	맞벌이가구 지원	맞벌이가구 지원	소득인정액 경감
					다문화가구 지원	다문화가구 지원	다문화가구 지원	보육료 전액지원

주: 당초예산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 예산안 분석

○ 2013년도 보육료 지원예산,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합산한 예산을 살펴보면 보육료지원 예산은 국비,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포함 총 5조 5,677억원이며 양육수당 1조 3,066억원을 포함할 경우 6조 8743억원임

○ 영유아보육료 지원예산의 경우 9.6% 감소하였는데 주요 감소원인은 보육료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소득상위 30% 가구의 만 0~2세 아동이 어린이집 이용시 2012년 무상에서 2013년 10~20만원의 본인부담을 부과한 것과 2012년 모든 아동에게 종일제를 기준으로 지원하였으나, 2013년 반일제 도입으로 지원단가가 하향조정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임

○ 반면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만 0~2세 차상위계층까지만 지원하던 것을 2013년부터 만 0~5세 소득하위 7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 511.0%(5,245억원) 증가하였음

〈표 9〉 2013년 영유아 보육료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12예산	2013예산	증 감	
				증감액	증감율
보육료	국고	23,913	21,623	–2290	–9.6
	지방비	24,494	22,096	–2398	–9.8
	교육교부금	4,380 (누리: 5세아)	11,958 (누리: 3~4세아)	7,578	173.0
	소계	52,787	55,677	2,890	5.5
양육수당	국고	1,026	6,272	5,246	511.3
	지방비	1,112	6,794	5,682	511.3
	소계	2,138	13,066	10,928	511.1
보육 + 양육수당	국고	24,939	27,875	2,956	11.9
	지방비	25,606	28,890	3,284	12.8
	교육교부금	4,380 (누리: 5세아)	11,958 (누리: 3~4세아)	7,578	173.0
합 계		54,925	68,743	13,818	25.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예산안 분석

나. 쟁점사항

○ 보육료 지원대상 범위가 일부 계층에서 전 계층 무상보육으로 확대 됨에 따라 기준보조율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한다는 지방의 입장과 기존의 보조율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중앙정부의 갈등이 심각한 상태임

○ 국회예산정책처(2013)의 201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만 3~4세 보육료의 지자체 재정력과 보육비 부담수준 불일치 문제

– 만 3~4세 보육료의 경우 2013년에 지원대상이 전 계층으로 확대되지만 지자체별 재원부담은 소득하위 70% 까지 지원되었던 2012년과 동일하므로 각 지자체는 교부액에 매칭하여 2012년과 동일한 금액을 지방비로 부담하여야 함

– 이 경우 소득하위 인구 비율이 높은 지자체일수록 지원대상이 많아 지방비 부담의 역전현상이 나타날 것임

→ 가정양육수당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 2012년 가정양육수당의 총 지출규모는 전년 대비 1조 928억원(511.0%) 증가한 1조 3,066억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지방비는 5,682억원 증가한 6,794억원씩 각각 부담할 예정으로 지방비 부담이 더욱 증가할 예정임

→ 지원대상자 및 지원수준에 대한 포괄적 위임문제

– 보육료 지원이 의무지출임에도 지출대상을 정하는 규정이 법률 – 시행규칙 – 지침으로 단계적으로 위임되어 있어, 법령의 규정만으로 지출대상을 특정하고 지출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상의 내용 이외에도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대상 범위가 법령과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영유아보육대상은 규정이 규칙과 지침으로 위임되어 있으므로 지출대상 뿐만 아니라 규모가 변동될 수 있는 문제

쟁점 2. 사회정책 변화를 반영한 국고보조율 체계 미정비로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

가.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 운영현황

○ 대부분의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 체계는 1986년도에 개정되었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의 기준을 현재에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1980년대는 현재와 같이 국가와 국민 모두 사회복지에 대해 관심과 요구가 크지 않았던 상황에서 사회복지 사업 특성별로 일관된 기준이나 원칙을 가지고 기준보조율을 설정하였던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타 사업들과 더불어서 결정되었던 시기임

○ 차등보조 대상사업은 현재 기초생활급여, 영유아보육사업, 기초노령연금사업 등 3개 사업이며 사회보장비지수와 노인인구비율, 재정자주도에 따라 ±10%의 비율로 조정되고 있음

〈표 10〉 차등보조율 적용 대상 및 기준

<table>
<tr><th>구 분</th><th>기준보조율</th><th colspan="5">차등보조율</th></tr>
<tr><td>기초생활급여</td><td>서울: 50%
지방: 80%</td><td colspan="5">– 10% 인상: 재정자주도 80 미만, 사회보장비지수 25 이상
– 10% 인하: 재정자주도 85 이상, 사회보장비지수 20 미만</td></tr>
<tr><td>영유아보육사업</td><td>서울: 20%
지방: 50%</td><td colspan="5">– 10% 인상: 재정자주도 80 미만, 사회보장비지수 25 이상
– 10% 인하: 재정자주도 85 이상, 사회보장비지수 20 미만</td></tr>
<tr><td rowspan="5">기초노령연금</td><td rowspan="5">서울, 지방 구분 없음</td><td colspan="2" rowspan="2">구 분</td><td colspan="3">노인인구 비율</td></tr>
<tr><td>14%미만</td><td>14~20%</td><td>20%이상</td></tr>
<tr><td rowspan="3">재정
자주도</td><td>90%이상</td><td>40%</td><td>50%</td><td>60%</td></tr>
<tr><td>80~90%</td><td>50%</td><td>60%</td><td>70%</td></tr>
<tr><td>80%미만</td><td>70%</td><td>80%</td><td>90%</td></tr>
</table>

주 1: 재정자주도=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 / 세출예산
사회보장비지수=* 사회보장 · 복지예산 / 세출예산
주 2: 재정자주도와 사회보장비 지수는 전전년도 최종예산 기준임

○ 차등보조율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도 예산에 적용되는 즉, 2010년도 최종예산 기준으로 인상보조율이 적용되는 자치단체는 71개 자치단체이고 인하보조율 대상 단체는 1개 자치단체로 나타났음

– 인상보조율 적용을 받는 자치단체 71개 중 자치구가 65개로서, 자치구 69개 중 65개 인상된 보조율을 지원받고 있으며, 반면 시는 73개 중에서 6개 시만이, 군은 인상보조 대상이 하나도 없음

〈표 11〉 차등보조율 적용 대상 자치단체

구분	인상보조율 대상	인하보조율 대상	미적용 자치단체	계
시	6	0	67	73
군	0	0	86	86
자치구	65	1	3	69
합계	71	1	156	228

주: 2010년 최종예산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2년 예산안 분석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향

나. 쟁점사항

① 기준보조율관련 쟁점사항

○ 현재의 기준보조율이 25년 전의 보조율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사회복지정책 기조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 즉, 공공부조 형태의 지원 대상도 많지 않았던 시절의 보조율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서 이후 기반투자와 같은 사회복지정책 기조의 급격한 변화나 대상 급증에 따른 부작용들이 심각한 상황임[5)]

○ 특히 사회복지예산은 지방비 부담을 의무화하는 보조사업이 대부분으로서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증가되는 지출구조를 가지고 있음
· 지방예산 중 사회복지비 비중 : '06년 13.3% → '11년 20.2% → '13년 22.3%
· 노령연금 지방비('08.1 시행) : '10년 9,908억원 → '11년 9,681억원 → '12년 10,098억원 → '13년 10,712억원
· 보육사업은 보조율이 낮은 상황(49%)에서 그 대상이 확대되었는데 영유아 보육료 · 양육수당 지방비 '11년 20,777억원 → '12년 25,606억원 → '13년 36,147억원으로 급증

② 차등보조율관련 쟁점사항

○ 차등보조율과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사회보장 · 복지비지수(=사회보장 · 복지예산/세출예산)를 지표로 하여 복지수요를 산정하고 있어 개별 복지사업의 성격을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국회입법조사처, 2010)
– 예를 들어, 사회보장 · 복지예산 비율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수급자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못함에도 사회보장 · 복지예산 비율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사업의 복지수요를 산정하는 것은 측정지표의 타당도(validity)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 대전광역시 ○○구와 △△구의 경우, 자치구 총 인구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배 이상 차이가 남에도 사회보장 · 복지비지수가 유사하기 때문에 국고보조율이 90%로 같게 됨
– 부산광역시 ○○구와 △△구의 경우에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3.7배 가량 차이가 남에도 국고보조율이 90%로 동일한 상황임

---

5) 예를 들어 보육료지원 등과 같이 출산장려를 위해 보편적 사회서비스로 전환된 복지사업의 기준보조율이 초기의 50%가 현재까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사회정책 기조의 변화를 보조율에서 반영하지 못한 것임. 또한 중앙정부가 운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준과 수급자 판정기준을 운영하면서 지방재정의 부담을 표준적으로 요구하면, 지방재정력에 따라 기초복지서비스의 현실적 수준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프로그램에서 기준보조율 적용은 수급권자들의 복지권 측면에서 쟁점이 될 수 있음(이재원, 2012)

○ 차등보조율을 인하, 인상, 유지의 3단계로만 적용하는 것에 따른 격차가 크다는 쟁점이 있음
  – 영유아 보육사업의 경우, 인하보조율이 적용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 부담비율은 63%인 반면 유지보조율이 적용되는 자치구의 재원 부담비율은 40%, 인상보조율이 적용되는 자치구의 재원 부담비율은 21%가 됨
  – 즉, 인하, 유지, 인상의 3단계 사이 각각의 자치구 재원 부담비율에 있어 격차가 23%p, 19%p로 너무 큰 차이가 난다는 것임
○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지방비부담에 대한 광역–기초자치단체간 부담비율을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의 도(道)가 부담비율을 일괄 20대 80으로 정하여 차등보조율제도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시 · 군 등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이 지나치며, 특히 노인인구가 많은 시 · 군의 상황은 더욱 어려운 실정임(국회입법조사처, 2010)
  – 전라남도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군(총인구의 31.4%가 노인인구)의 경우, 2009년 사회복지예산(최종예산 기준) 중 기초노령연금 지원예산이 27.8%를 차지하였고, 올해에는 사회복지예산(당초예산기준)의 35.5%를 차지함

쟁점 3. 중앙–지방간 형식적인 협의과정으로 인해 복지비 부담이 자치단체에 전가

가. 중앙-지방 협의체 운영현황

○ 지방재정법 제25조~제27조의 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법령 제개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세입, 세출, 국고채무 부담행위, 국고보조금 교부시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주요 경비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광역과 기초간 재원분담비율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 중앙부처의 경우 해당 부처 고유의 사업이나 업무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규모는 작지만 모든 부처의 사업들을 하고 있는 종합행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환경, 농림수산, 복지 등 최소한의 국가사무인 외교와 안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앙부처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중앙부처 각각은 경쟁적으로 사업들을 기획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국비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사업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모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 특히 자치단체장이 민선에 의한 선출직이 되면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국비지원율이 높고 낮은 것과는 상관 없이 중앙부처의 대규모 사업을 유치했다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후의 재정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공모사업에 응찰하고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임

나. 쟁점사항

○ 법적으로는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중앙부처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심의하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그 심의결과에 강제력이 없어서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오고 있음

– 특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기준보조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의 경우 해당 부처에서 임의적으로 보조율을 결정하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임

○ 국가적 복지시책 확대과정에 비용을 분담하는 자치단체의 참여가 미흡해 매칭 지방비 수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 특히, 최근 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영유아 보육사업의 경우 평균 국고보조율이 49%*에 불과해 국가적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을 자치단체로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타 복지사업 평균 국고보조율 : 기초생활급여 79%, 기초노령연금 75% 등

**'11년 예산안 국회 부대의견 : 정부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운용되도록 노력한다

쟁점 4. 지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앙의 이해 부족으로 지방재정부담 가중[6]

가. 사회복지사업에 따른 지방의 부담 현황

○ 국고보조사업 증가는 대부분 사회복지 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08년(22.4조원) 대비 '13년(34.0조원) 국고보조금 증가분 11.6조원 중 복지부 국고보조금 증가분이 6.0조원으로 51.7%를 차지함

– 국가의 복지시책적 국고보조사업 확대는 매칭 지방비 증가를 초래하여 최근 복지부 국고보조사업에 매칭되는 지방비는 연평균 12.8% 증가

* 지방예산 증가율 4.3%, 복지부 국고보조금 증가율 8.6%를 상회

6)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은 이를 두고 복지깔때기라고 함. 즉, 깔때기 형태에서 보듯 여러 가닥으로 폭넓게 이뤄지던 얘기가 마지막에는 한 가지 주제로 집약된다는 것으로써 어떤 대화나 행위를 할 때 결론은 하나로 귀결된다는 뜻임. 즉 여기서 깔때기의 좁은 목은 병목현상의 요인으로서 업무 과다로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가 깔때기 이론을 거론하고 있는 것임. 정부의 복지정책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면서 복지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깔때기의 목에 해당하는 현장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절대 부족한 데 따른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써 밤낮으로 뛰어도 할 일을 다 못하는 현실을 고발하는 얘기이기도 함

〈표 12〉 연도별 복지부 국고보조사업과 대응 지방비 부담

(단위: 조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일반회계 (복지부)	15.9	19.3	19.2	20.5	22.0	27.0	11.2%
국고보조금 (복지부)	11.7	13.9	13.7	14.4	15.5	17.7	8.6%
대응 지방비	5.1	6.1	6.2	6.7	7.4	9.3	12.8%

※ 사회복지 = 사회복지분야 + 보건분야 / '08~ '12 당초예산 순계기준, '13 통합재정지출 기준
※ 자료 :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08~ '12),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13)
※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예산개요('08~ '13)

〈표 13〉 국가 주요 복지시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현황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년대비)
'08년	기초노령연금 신설	0.8조	1.1조	1.0조	1.0조	1.0조	1.1조	↑ 624억
'09년	양육수당 신설	–	364억	711억	971억	1,112억	9,544억	↑ 8,432억
'10년	장애인연금 신설	–	–	733억	1,420억	1,435억	1,681억	↑ 246억
'11년	영유아 보육료 확대	–	–	1.8조	2.0조	2.4조	2.7조	↑ 2,109억

나. 쟁점사항

○ 중앙은 지자체에 대해 내년이면 민선 6기를 앞둔 현시점에서도 25년 전과 같이 중앙의 계획에 따라 집행만 하는 일선기관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임

○ 이에 따라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해서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관련된 제도나 체계들이 변화될 수 없었음

○ 그 결과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라 자치단체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

– 최근 6년간 ('08~'13) 사회복지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11.5%에 달해 전체 지방예산 증가율 4.3%의 약 2.6배

– 또한, 국가의 복지지출 증가율 7.2%보다 높아 최근 복지정책의 확대는 국가보다 지방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

– 자치단체 사회복지 예산의 대부분은 법정의무경비인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비 급증에 따라 자체사업을 축소하는 등 자치단체 재정운용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Ⅴ.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개선방향

□ 국가정책 기조에 걸맞는 영유아보육사업 재정지원 강화

○ 최근 언론에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모 지자체에서 예산이 없으므로 지원하지 못한다 또는 일정기간 보류했다가 추경편성 후 한꺼번에 지원하겠다 등의 기사가 심심치 않게 등장함
○ 영유아보육지원사업의 경우 이미 취약계층의 영유아 보육 목적인 잔여적 사회복지 차원을 떠나서 국가의 저출산 대책이라는 범국가적인 목적의 전국적, 의무적 무상보육의 보편적 사회서비스로 변화되었음
○ 따라서 국회 법사위에 이미 6개월여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지원사업 국고보조율의 70%(서울 40%) 인상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사업의 국가시책화에 따라 국고보조율 체계 재정비

○ 사업의 성격상 사회복지사업은 향후 대상이나 예산규모가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OECD 국가들의 사회보장비 지출비율과 비교해보더라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임
  – 따라서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문제점을 완화시키고 향후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국고보조율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함
○ 차등보조율과 관련해서도 전체 기초지자체를 동등하게 놓게 지표 2개로 인상, 인하단체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정책기조에 맞도록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동종계층별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많은 선행논문들에서도 지적하고 있음
  – 또한 지표의 경우도 사회보장비나 노인인구 비율이 아닌 실질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수급자수를 지표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임

□ 고용과 생산을 동반하는 지역사회서비스에 투자 및 지방의 재량 확대

○ 최근 사회적기업이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활성화 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서비스는 소득의 재분배가 필요한 전통적 복지차원의 취약계층이 아닌 일시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현대사회 위기에 적합한 사회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사회서비스는 현금급여방식이 아니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을 통해서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이를 수행할 인력의 고용창출효과도 있다는 점에서 향후 지향해야 할 고용 및 생산적 서비스라고 판단됨

○ 이를 위해서는 지역산업을 잘 이해하고 지역주민의 성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지자체에 재량을 부여하여 크게는 지역에 적합하고 작게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국가와 지방의 협의절차 강화

○ 각 부처별로 다양한 사업들이 기획되고 시행되고 있으나 모든 부처 사업을 집행하는 종착점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임을 감안할 때 유사중복 사업이나 지나치게 낮은 국비보조 사업 등에 대해 안전행정부 차원에서 엄격한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중앙은 25년 전과 같이 지방을 일선기관이 아니라 모든 부처의 사업을 수행하는 종합행정기관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협의 절차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현재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방비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강제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Ⅵ. 맺음말

○ 기부예찬론자는 어려운 집단을 돕고, 유익한 조직을 지원하며, 환경보호론자는 국가나 지역 개발에 앞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널리 알린다는 면에서 이 두 그룹은 이질적이지만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둘 다 미래를 대비한다는 점임

– 즉, 미래의 세대는 현재처럼 편안한 조건의 자신을 가질 수 없거나 지금과 같은 살만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서, 현재 기부하는 나 자신과 자연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살만한 조건의 나 자신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미래의 상황에 대비하여 기부문화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조금 불편하지만 준비를 하자는 것임

○ 중앙집권은 효율적이지만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 개개인을 살필 수 없다는 맹점이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실시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일 것임

– 중앙의 시각에서 보면 제6기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현재 지방의 낭비사례나 자치단체장의 부도덕성, 일부 소규모 지자체의 인건비를 둘러싼 조직운영의 비효율성 등이 지방자치제도가 회의적인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임

- 중앙의 시각에서 보면 제6기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현재 지방의 낭비사례나 자치단체장의 부도덕성, 일부 소규모 지자체의 인건비를 둘러싼 조직운영의 비효율성 등이 지방자치제도가 회의적인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임
- 그러나 지역주민의 시각에서 보면 인구가 몇 명 안되는 농촌마을이지만 그 일부를 위해 주민자치센터에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주고 무료병원검진 차량이 정기적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혼자 사는 주민들을 위한 사회복지사 숫자가 점점 증가하는 등 도시가 아닌 낙후지역에서도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고 가끔 인사 나온 군수나 시장을 만날 수 있는 것은 4년에 한번 선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됨

○ 따라서 중앙정부는 지방을 자치제 실시 이전의 일선기관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내 미래 세대들이 주어진 조건에 상관없이 중앙의 커다란 기관에서는 파악하지 못하지만 지역에서는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가까이서 보살펴 주는 울타리로 생각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방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중앙정부는 복지개념 조차 낯설던 시대의 국고보조사업 운영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결되고 지역주민 각각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국민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지방이 지역주민의 특성에 맞게 일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임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2012~2016 국가재정운용계획, 2012.
국회예산정책처, 2009~2013 국회예산안 중점분석.
박인화, “지방자치단체 기초노령연금 지출과 문제점 분석” , 재정지출 동향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11.
심혜정, 사회복지분야의 분권화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09.
이재원,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 한국지방정부학회 발표논문, 2007. 3.
이재원, “사회서비스 투자를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 강화 방안” , 한국지방재정논집, 2011. 8.
이재원,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비 지출의 현황과 특성 분석” , 지방재정과 지방세, 2011. 12.
이재원, “사회복지 기능분담을 위한 재원배분 방향” , 지방재정, 2012. 2.
이채정,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2011.
임성일외,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지역발전위원회, 2012.
최병호외,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지방간 재원분담체계 개선, 행정안전부, 20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서초동) TEL. 02-3488-7399 FAX. 02-3488-7309